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감사담당관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안전부의 「시·군·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(안)」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납세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줄 수 있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반영하여 정비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

2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3. 8. 17. ~ 9. 6.(20일)
- 예고방법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부패/인권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부패/ 인권 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성별/ 아동 영향평가 결과: 제외대상

5) 법제심사 결과 : 검토의견 반영(편집용지 좌우여백 수정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2회 이상”을 “3회 이상”으로, “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,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”를 “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,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회”를 “3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)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<u>2회 이상</u>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<u>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,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.</u>	제16조(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3회 이상</u> --- -- <u>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,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.</u>
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<u>2회 이상</u>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.	② ----- <u>3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감사담당관 정 표 근